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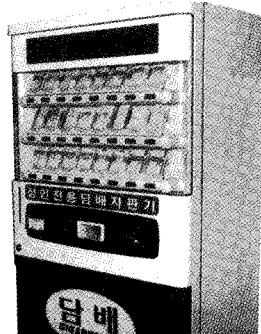
성인인증장치 범위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공고

그간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성인인증장치의 그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2003년 7월 29일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적인 설치를 인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세부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신분증 방식만이 아닌 신용카드 등 금융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까지를 포함해 기술의 다양성 측면을 반영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새롭게 공고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세부 내용과 이번 입법이 미칠 시장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증 개정령안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거나, 이를 조합하는 방식과 같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의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가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성인인증장치, 기술의 다양성 측면 적극 인정

이번 개정령은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초 개정령에는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되리라 예상되었으나, 이 범위를 뛰어넘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거래 신용거래를 위한 장치까지를 포함시켰다. 게다가 그밖에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정령은 기술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성인인증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술발전에 따라 여러 성인인증방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뢰성만 입증된다면 어떠한 기술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번 개정령의 입법취지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포함된 신분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방식이외에도 기타 신기술을 적용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관련업체의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거쳐, 차후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개정령은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이 되게 된다. 별다른 이견들이 없으면 현재의 안대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성이 높다.

이번 구체적인 성인인증장치의 범위 지정으로 해당 사업체들은 원하는 기술을 선택, 담배자동판매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능한 기술만 해도 신분증 방식에다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방식까지를 포함 할 수가 있다. 인증장치 기술이 독점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후발업체들도 범용적으로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다양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신분증을 사용한 인증장치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업체들이 신분증 방식으로 집중적인 준비를 해와 이미 제품에 도입을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은 경제성 측면에서 신분증 방식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적극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사용 수수료 문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가 있어 담배구입 같은 소액결제로 활용되기에는 감수해야 할 부담이 크다.

기타 현재로서 가능한 인증방법으로 보이는 지문, 홍채 등의 인증 방법 역시 이용자의 거부감 문제, 또 사용상의 번거로운 문제 등의 요인으로 상용 기술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신분증 방식, 신뢰성 보장 문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과연 인증장치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성인인증의 입수률, 위변조 방지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인증장치가 유통되게 되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더 나아가 성인인증담배자판기를 합법화한 법개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칠

수도 있어 신뢰성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성인인증담배자판기에 대한 KOVA 품질인증마크가 그 해법이다.

협회는 성인인증담배판기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의견조율 작업을 거쳐 왔다.

당연히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는 KOVA 인증의 시험성능기준을 철저하게 정해 인증을 실시함으로서 대외적인 신뢰성을 보장할 것임을 극구 주장해 왔다. 당초에는 그 실효를 반신반의하던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방향으로의 신뢰성 보장 방법을 검토한 끝에 KOVA마크의 도입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데 인

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협회가 타이트한 기준으로 마련한 성능기준안에 합격 하게 된다면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인인증장치 성능 기준을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행정지침에 KOVA 성능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본격 사업 활성화 시점, 시장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성인인증장치의 세부범위도 정해졌고, 관련업체의 참여로 KOVA 인증 제도도 적극 도입이 되게 된다. 비로소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려는 관련 업체의 시장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이 시장의 선발주자였던 엘리트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여러 유통방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KT&G 성인인증담배자판기 입찰에서는 LG상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0여대 물량의 납품을 진행하게 된다.

담배자판기는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당당하게 로케이션 확대작업을 진행해 나가게 된 것이다. 비록 아웃도어까지의 자유로운 설치환경 확보까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거쳐야 하겠지만 공공장소 흡연구역 및 기타 허가된 로케이션만으로도 사업적인 메리트는 크다. 더욱이 성인인증담배자판기가 필드에서 청소년 금연 효과에 혁혁한 역할이 입증이 된다면 자유로운 로케이션 확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

성인인증장치가 철저히 청소년 이용을 차단한다면 아웃도어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문제는 아직 그 신뢰성을 검증받지 못했기에, 또 금연정책을 우선시하는 대외 여론에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치처럼 담배자판기 사업 여건도 한 단계 한 단계 호전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청소년 금연 효과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유통기기로서의 효용성을 하루빨리 입증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담배자판기 관련 규정 총정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 2 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

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제 5 장 벌 칙

제34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6952호, 2003.7.29>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률 제6952호(2003.7.29)

◎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영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거나, 이를 조합하는 방식과 같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의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가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